

3] 채무 및 부채

3-1. 지방채무 현황

-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사하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천원)

구 분	'11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2년도 현재액 E=(A+B)	인구수 (F)	1인당 채무액 (E/F),천원
		계 (B-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		
합 계	2,004	△464	0	464	1,540	352,726	4
일 반 회 계	2,004	△464	0	464	1,540	352,726	4

- ▶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(원금 기준, BTL 지급액 제외)
- ▶ 인구수는 2012.12.31일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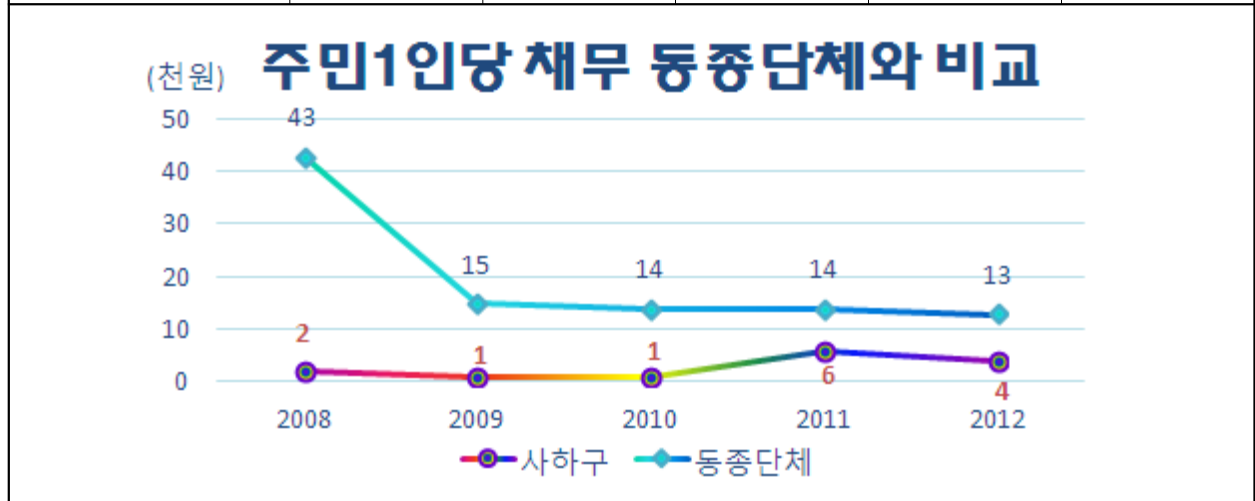
☞ 2012년 지방채무 발행내역은 없으며 상환한 내역은 지방채(을숙도문화회관 건립, 괴정2동사 신축) 165백만원과 선셋로드 조성사업의 채무부담행위 299백만원이고 남은 채무내역은 괴정2동사 신축(4천만원)과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(15억)의 지방채입니다.

※ 괴정2동사 신축 4천만원은 5월에 상환하여 2013년 8월 현재는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지방채 15억만 남았습니다. 남은 금액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것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타 동종단체에 비해 지방채무 부담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.

8 연도별 비교

(단위 : 백만원, 명, 천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8	2009	2010	2011	2012
채무현황(백만원)	700	535	370	2,004	1,540
인구수(명)	365,368	359,800	358,730	355,443	352,726
주민1인당채무(천원)	2	1	1	6	4



- ▶ '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

3-1-1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08	2009	2010	2011	2012
지방채발행한도액(A)	6,900	9,900	7,600	5,700	5,800
발행액(B)	0	0	0	1,500	0
발행비율(B/A*100)	0%	0%	0%	26%	0%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